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하는가?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번: 202211453 이름: 조가영

1. 서론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법안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해마다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재발생하면서 연령을 낮춰야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여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하향하자는 법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며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1] 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또 다른 반대 입장으로 연령을 낮추는 대책보다 소년범들이 반성하며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령 하향은 사회 복귀 저해가 우려되며 실효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법무부는[2]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이며 보호처분이 부당할 경우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검사가 항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런 법안이 나오기 전부터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촉법소년들의 범죄를 줄이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의 법안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한다는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2.1.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하는 첫 번째 근거로 촉법소년의 범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0세에서 18세의 인구가 453만 명에서 408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청소년의 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촉법소년 범죄는 7,898건에서 12,502건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의 청소년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왜 촉법소년의 범죄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을까? 강효상 의원은 “과거에 비해 높아진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숙도에 따라 강력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으며, 그 수법도 성인범죄에 못지않게 흉포화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해 청소년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앞서 이석현 의원도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2세로 낮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실화이고, 적정한 형사 제재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켜야 한다.”라며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3] 현행 소년법에서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살 미만의 기준은 1950년대에 제정된 것으로 69년 전 법안이다.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을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으로 다스려 잘못을 깨우치게 하고 변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왔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를 보았을 때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변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촉법소년의 범죄는 늘어나고 있으며 재범죄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법안은 촉법소년들의 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이며 촉법소년의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보호할 수 있는 한걸음이 될 것이다.

2.2. 우리는 촉법소년이어서 보호를 받으니 괜찮아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 송치 인원 35,390명 중 62.7%가 만 13세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현재 촉

---

1) 국가인권위원회
2) 법무부
3) 남선모,「형사책임연령 하향조정 인식에 따른 실질적 개선에 관한 연구」

법소년의 연령은 만 10살 이상에서 14살 미만까지로 만 13세의 아이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촉법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월 울산에선 심야시간대 무인 점포 결제기를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A군(13세)이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20여 차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해왔고, 피해 금액은 7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두 차례 붙잡혔으나 풀려나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서에서 그는 당당하게 난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겠냐며 큰소리를 쳤다.”[4]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반성 또한 하지 않으며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유형 또한 다양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의 범죄유형을 보았을 때 절도가 2만 2993명, 폭력 1만 199명, 강간•추행 1913명, 방화 229명, 강도 47명, 살인 9명 총 3만 5390명이며 피해자 또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보았을 때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 송치된 인원 35,390명에서 62.7%가 만 13세였기 때문이다. 반절이 넘는 인원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는다. 또한, 대게 반성을 하지 않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대범죄를 일으키며 피해자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이처럼 촉법소년의 연령을 한 살이라도 낮추어 촉법소년을 악용하여 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을 줄이고 처벌을 받게 하여 법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줘야 한다.

3. 반론 및 재반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반대 입장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어린 소년범에게 부정적인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으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회 복귀를 저해할 수 있어 실효적 대안이 아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반하다,”[5]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여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긴 하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며 보호처분이 부당할 경우에는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검사가 항고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어린 소년범을 무조건 처벌하려는 것이 아닌 그들의 의견도 존중하며 그에 맞는 적당한 처벌을 내리려고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촉법소년의 재범률의 문제점을 연령을 낮춰서 해결하기보다 촉법소년들의 범죄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동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저연령 소년의 범죄를 촉발하는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청소년기는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심리적 혼란의 시기로 정서 및 행동 문제가 유발되기에 취약한 상태이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연구영역에서는 비행을 발생시키거나 그러한 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의 연구가 주로 시행되어왔다. 현재까지 아동·청소년에게 범죄 행동을 촉발하는 것으로 보고된 심리적 요인은 일반적으로 우울, 분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자기통제력 등이 존재한다. 실제로 소년원과 분류 심사원에 있는 비행 청소년들의 정신질환 실태를 연구한 결과, 이미 입소 전부터 복합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발견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비행과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판단오류에 해당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심리상태가 범죄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6] 고 알려져 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뿐만 아니라 소년들의 재사회화 교육 강화와 수도권에 학교 교육 중심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보호관찰 전담인력을 증원한다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

4. 결론

---

4)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2/07/02/KNFOEU3LAFHGJHAN4GBGVVQAXU/”, 조선일보, 허윤희 기자

5) 국가인권위원회

6) 권다희,「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연령에 관한 연구」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법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령 하향 법안은 사회 복귀 저해가 우려되며 실효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소년범들이 반성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령 하향을 주장한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법안을 제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이며 소년원 시설 처우를 개선하고 소년들의 재사회화 교육 강화, 수도권에 학교 교육 중심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보호관찰 하는 전담인력 증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마다 촉법소년의 범죄와 재범죄율은 증가하고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소년들을 줄이기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된 법안은 범죄도 예방하며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도 분명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연령 하향만으로는 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율을 줄일 수 없다고 하지만 연령 하향과 함께 법무부가 제안한 것과 같이 촉법소년의 범죄의 원인을 이해하고 정확한 분석을 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같이 실시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함으로써 법을 악용하려는 소년들에게 법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다.

5. 참고문헌

조선일보, “난 어려서 교도소 안 가” 法 악용하는 소년범에 경종 울리나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2/07/02/KNFOEU3LAFHGJHAN4GBGVVQAXU
중앙일보,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80% 찬성, 인권위 “사회 복귀 저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0736#home
촉법소년 연령 하향…쟁점은?
https://www.youtube.com/watch?v=QQApi5Q9v3E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인권위 “반대”
https://www.youtube.com/watch?v=4J1JVlT8wcU
권다희,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연령에 관한 연구」
남선모, 「형사책임연령 하향조정 인식에 따른 실질적 개선에 관한 연구」